

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6-108호

사 회 적 기 업 인 증 취 소 공 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내 사회적기업의 인증취소를 공고합니다.

기업명 (인증번호)	대표자명 (사업체 주소)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처분내용	처분일자
		근거규정	처분사유		
(주) 앵 커 랩 (제 2 0 2 4 - 2 0 4 호)	전 미 영 (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상가 세운메이 커스큐브 동-301호)	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8조제1항제4호	사 회 적 기 업 인 증 취 소 신 청	사 회 적 기 업 인 증 취 소	2026. 8. 20.

2026. 8. 21.

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

